

평생교육원 학점인정과정 운영세칙

2011. 6. 13 제정

- 제 1 조 (목적) 이 세칙은 이화여자대학교 학칙 제50조의2의 규정에 따라 평생교육원에서 개설하는 학점인정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 2 조 (지원자격) 학점인정과정(이하 “본 과정”이라 한다)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여자로 한다.
1. 대학교를 졸업한 자
 2. 기타 법령에 의하여 대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
- 제 3 조 (학생정원) 본 과정의 정원은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평생교육진흥원의 과목당 총 인정 정원으로 한다.
- 제 4 조 (학년도, 학기) 학년도는 1학기, 2학기로 구분하고, 필요시 하계 또는 동계에 4주 이상의 계절학기를 운영할 수 있다.
- 제 5 조 (모집방법 및 등록시기) 모집방법 및 등록시기는 평생교육원장이 정한다.
- 제 6 조 (지원절차) 본 과정에 지원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1. 입학원서
 2. 출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, 법령에 의해 자격이 인정되는 자의 경우 자격인정증명서
 3. 기타 필요한 서류
- 제 7 조 (전형방법) 지원자의 전형방법 및 시기는 평생교육원장이 정하며, 모집전공별로 전형료를 부과할 수 있다.
- 제 8 조 (등록) ①전형에 합격한 자는 수강신청 후, 정해진 소정의 등록금을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.
- ②제1항의 등록금을 납부한 자는 본 과정의 학생으로 등록된다.
- 제 9 조 (수업일수) 수업일수는 매학기 8주 이상으로 한다.
- 제 10 조 (휴강 및 보강) 법정공휴일로 인한 공식적 휴강 외에는 보강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제 11 조 (교육과정) 본 과정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교육과정에 의거한 교육과정에 따른다.
- 제 12 조 (교과목 이수단위) 교과목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되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하고, 실험·실습·실기 등은 30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.
- 제 13 조 (수강신청 기준학점) 본 과정 학생의 수강신청 기준학점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별표 1에 의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학점 범위 내로 한다.
- 제 14 조 (시험) ①시험은 매 학기의 중간 및 학기말에 시행하며, 필요할 경우 임시

시험을 시행할 수도 있다.

②시험은 필답고사를 원칙으로 하되, 실험·실습·실기 기타 이에 준하는 특수과목의 경우 이와 다른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.

제 15 조 (성적평가)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하며, 평가방법은 따로 정한다.

등급	점수	평점
A+	95~100	4.5
A0	90~94	4.0
B+	85~89	3.5
B0	80~84	3.0
C+	75~79	2.5
C0	70~74	2.0
D+	65~69	1.5
D0	60~64	1.0
F	0~59	0

제 16 조 (학점인정)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을 충족하여야 한다.

1. 해당과목의 이수에 필요한 총 시간의 10분의 8이상을 출석할 것
2. 해당과목의 성적이 60점 이상일 것

제 17 조 (출석관리) ①모든 교과목은 출석부를 작성하여 해당 과목 교강사에 의해 매시간 출석점검을 하여야 한다.

②출석부는 교학실에 비치하고 관리하며, 매학기 종료 전까지 1회 이상 종합적인 출결점검을 하여야 한다.

③교학실은 종합 출결점검 결과를 활용하여 중도탈락자를 방지하여야 한다.

제 18 조 (학점의 취소) 시험에서의 과오 또는 부정행위로 학점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이를 취소한다.

제 19 조 (학위수여 요건) 본 과정을 수강한 자가 본교에서 학위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.

1. 전공과목 48학점 이상을 본교 평생교육원의 학점인정과정을 통해 취득하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해 인정받은 자
2. 심리학전공, 아동학전공에 해당하는 자
3. 전공필수 과목의 학점을 모두 취득한 자

제 20 조 (학위수여) 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 제9조 및 학칙 제50조의2에 의하여 본교의 학사학위수여 신청을 한 자에게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심사를 하여 별지(서식 제1호)의 증서에 의하여 다음의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.

학위의 종류	전 공
문학사	심리학 아동학

제 21 조 (학위신청 절차) ①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하여 본교 학사학위

를 수여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정해진 기간에 평생교육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학사학위신청서

2. 평생교육진흥원장이 발행한 학점인정증명서

②평생교육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 제20조의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학위수여예정자 명단을 작성하고 이를 평생교육진흥원에 통보하여야 한다.

③평생교육원장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위수여조건 충족 등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다는 통보를 받은 자에 한하여 교무처장에게 학위수여자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.

제 22 조 (학적관리) 평생교육원은 본 과정의 학생에 대하여 별도의 학적관리를 하며, 재학증명서, 이수증명서, 성적증명서 등을 발급할 수 있다.

제 23 조 (전담교수진 및 전문인력) 본 과정의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각 전공별 주임교수, 학점인정과정 팀장 및 전임연구원을 둘 수 있다.

제 24 조 (보칙) 이 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본교 학칙을 준용한다.

부 칙(2011. 6. 13 제정)

이 세칙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